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추진 필수 인력 증원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 나. 일반직, 지도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원활한 인력관리
다. 전국(장애인)체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국체전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 1,774명 → 1,795명(+21명)
- 1) 집행기관 : 1,746명 → 1,765명(+19명)
- 2) 의회사무기구 : 28명 → 30명(+2명)
- 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조정(안 별표 2)
- 1) 일반직
- 5급 : 7%이내 → 6%이내(△1%)
 - 6급 : 23.8이내 → 24.8%이내(+1%)
- 2) 지도직
- 지도관 : 9%이내 → 10%이내(+1%)
 - 지도사 : 91%이상 → 90%이상(△1%)

다.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1) 일반직 계 : 1,735명 → 1,755명(+20명)

- 5급 : 90명 → 91명(+1명)
- 6급 이하 : 1,625명 → 1,645명(+20명)
- 전문경력관 : 8명 → 7명(△1명)

2) 연구직 계 : 4명 → 5명(+1명)

- 연구사 : 4명 → 5명(+1명)

라. 한시 정원표 조정(안 별표 4)

: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존속기한 : 2020. 5. 31 → 2021. 5. 31(1년 연장)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74명이며”를 “1,79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46명”을 “1,76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8명”을 “30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5월 31일”을 “2021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경력관
비율	1%이내	6%이내	24.8%이내	28.8%이내	26%이내	12.4%이상	1%이내

※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이내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95	1,795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755	1,755					
3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1	39	3	5	4	13	27
6급이하 소계	1,645	1,645					
전문경력관 소계	7	7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총 계	3			
전국체전추진단	3	일반직 : 5급 1명, 6급 이하 2명	2021. 5.31	전국체전 추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774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746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8명</u> <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u>2020년 5월 31일</u> 까 지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795명</u> 이며-- -----. 1. ----- <u>1,765명</u> 2. ----- <u>30명</u> <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 ----- <u>2021년 5월 31일</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추진 필수인력 증원 및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총 21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단가와 '20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나.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21명을 증원할 경우 '20년 581,057천원을 포함하여 '24년까지 5,564,14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비 용	581,057	1,194,653	1,228,103	1,262,490	1,297,840	5,564,14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국 비	—	—	—	—	—	—
시 비	581,057	1,194,653	1,228,103	1,262,490	1,297,840	5,564,143
합 계	581,057	1,194,653	1,228,103	1,262,490	1,297,840	5,564,14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행정안전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양상병(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공무원 정원 증원 21명

2. 비용추계 방법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21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공무원 1인당 직급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년부터 '24년까지 '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용 보
	담 당	강 유 현
	담 당 자	양 상 병 (480-6773)